

제 1435 호
1989.5.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 공보관 반충남
전화 : 731-6111 ~ 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례

◎ 공문사항

물품 관리 전환 소요 조치 4

◎ 조례

제 2443 호 : 서울특별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조례 8

제 2444 호 : 서울특별시 한강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제 2445 호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10

제 2446 호 : 서울특별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11

규칙

제 2285 호 :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 규칙 13

(이면세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211 호 : 지역별 연단 공급 구역 지정	18
제 218 호 : 도시 계획 사업 (시설 놓기) 실시 계획 인가	19
제 219 호 : 아파트 지역 구개발 기본 계획 변경	20

◎ 공 고

제 359 호 : K·S 표시 허가 취소	21
제 360 호 : 도시 계획 시설 (도로) 변경 안내 공고	21
제 362 호 : 도시 계획 시설 (도로, 하수도) 실시 계획	22
제 363 호 : 제 2 종전 기공사업 영업 정지	23
제 365 호 : 서울특별시 회계 패제 공무원 임금 등록 및 폐기	24
제 366 호 : 제 2 종전 기공사업 면허 실효 및 영업 정지	38
제 369 호 : 제 2 종전 기공사업 영업 정지	38
제 378 호 : 제 2 종전 기공사업 영업 정지	39
제 381 호 : 서울특별시 근로 청소년 장학금 회계적 공무원 지정	39
제 382 호 : 2 종전 기공사업 면허 취소	40
제 383 호 : 2 종전 기공사업 면허 영업 정지	40
제 395 호 : 명동구역 제 5 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	40
제 398 호 : 주택 건설 (임대 주택) 사업 자영 업정지 처분 해제	41

◎ 구 고 시

제 3 호 : 도시 계획 사업 실시 계획 변경	42
제 6 호 : 도시 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	44
제 8 호 : 민영 주택 진설 사업 계획승인	44
제 11 호 : 도시 계획 사업 (학교) 시행 허가	45
제 16 호 : 민영 주택 진설 사업 변경 승인	45
제 20 호 : 민영 주택 진설 사업 계획승인	46
제 32 호 : 민영 주택 진설 일주자 모집 공고 승인	46
제 43 호 : 도시 계획 시설 (학교) 지적승인	47

◎ 구 공 고

제 1 호 : 도시 계획 사업 (도로) 실시 계획	47
제 2 호 : 도시 계획 사업 (도로) 실시 계획	48

제 2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2
제 3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2
제 3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3
제 3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3
제 3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4
제 4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4
제 6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5
제 6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5
제 6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6
제 77 호 :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56
제 7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공람	57
 ⑤ 사업소고시	
제 7 호 : 하천체계점용허가	58
제 9 호 : 선박운항허가고시	58
제 10 호 : 선박운항허가고시	59
 ⑥ 사 험	
 ⑦ 공지사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78

78-4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공 문 시 행

종무 01750-277

(6615)

수 신 : 홍보제회 담당관

제 목 : 불용 물품 관리 전후 소요 조회

1. 우리과 소관 물품 중 별첨 물품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 조회 합니다.

가. 관리전환 : 소요조회 물품명세서 1부 (별첨)

나. 조회기관 : 각 구청 및 산하 전사업소

다. '89년 5월 30일 까지 소요요청이 없을 때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 부 : 소요조회 물품명세서 1부. 끝.

총 무 과 장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78-5

○ 소요조회 물품명세서 (S/T 교환기 부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상 태	비 고
AB 계전기 앗센	2 S 용	개	30	신 품	
와이파	3 레벨	•	187	•	
콘센서	1 - CH	•	27	•	
램프캡	1 - A	•	30	•	
"	1 - B	•	28	•	
램프	2 - Y	•	280	•	
계전기 앗센	RT - 96	•	10	•	
"	RT - 124	•	29	•	
아마춰 븍싱		•	70	•	
R 계전기	TT - 14	•	27	•	
S "	TT - 60	•	30	•	
저항	63 - TC	•	15	•	
A 계전기 코일	200 + 200	•	60	•	
"	200 + 200 + 480	•	56	•	
B 계전기 코일	222 - AS	•	22	•	
스프링 앗센	222 - AS	•	25	•	
C 계전기 코일	221 - TAS	•	14	•	
C 계전기 앗센	221 - TAS	•	30	•	
D 계전기 코일	222 - TEJ	•	28	•	
D 계전기 스프링 앗센	222 - TEJ	•	24	•	
E 계전기 코일	222 - TL	•	24	•	
E 계전기 스프링 앗센	221 - TL	•	2	•	
스위치 플러그 앗센	16 PT	•	29	•	
파볼록	T 1139-1	•	91	•	
스매소날록	T 1144	•	122	•	
버티칼 아마춰	T 1054 A	•	22	•	
파볼록 스프링	T 1142	•	46	•	
사후트 스프링	T 1314	•	69	•	

78-6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상 태	비 고
베 아링핀	T1139-2	개	30	신 품	
"	T1054-A	"	18	"	
로타리아마퀴	T1073A	"	27	"	
크램프	T1316	"	25	"	
하부크램프	T1083B	"	20	"	
상부크램프	T1083B	"	15	"	
래리스링크	T1118	"	30	"	
캄스프링 및 브란켓 앗센	T1134A	"	27	"	
로타리인터럽터스프링	T1130A	"	30	"	
래리스아마퀴	T1108C	"	27	"	
제 전기 (TT-14)	324114	"	29	"	
" (TT-128)	324114	"	30	"	
63 저항	63-G	"	15	"	
"	63-TC	"	15	"	
휴 즈	3A	"	140	"	
B 제전기	22-AS	"	27	"	
C 제전기	221-TDK	"	4	"	
D 제전기	222-TEE	"	24	"	
E 제전기	221-TFE	"	23	"	
J 제전기 표걸	200 + 200	"	28	"	
콘에서	MD2+2	"	16	"	
정류기	SDR-3	"	4	"	
A 제전기	RT-319	"	26	"	
B 제전기	RT-25	"	22	"	
F A 제전기	RT-382	"	25	"	
S 제전기	RT-130	"	25	"	
램 프	1-A	"	141	"	
DFF, FTT, RTT 제전기	222-TRL	"	10	"	
FA RA 제전기	222-TRJ	"	8	"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78-7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비고
GO . SPF . FGF 계전기	222 - TRF	개	10	신품	
GO2 계전기	222 - TAR	개	10	"	
RH . IRF . CRH . CRF 계전기	222 - DFY	개	10	"	
DIF . BTE . RBIF 계전기	222 - THC	개	10	"	
유도선통	1 - D	개	15	"	
저 항	T 63 - CN	개	15	"	
"	T 63 - CS	개	15	"	
콘센서	50 - B	개	15	"	
저 항	63 - TC	개	15	"	
저 항 램프	10 - RE	개	75	"	
키Lon 주장치	KJ - 1030	대	34	중고	
키Lon 전화기	"	대	497	"	
증설밸	10 회로	개	34	"	
보류음송 출장치	"	개	34	"	
전화기	70 형	개	410	"	
"	체신 1호	개	99	노후	
믹서	30 채널	개	1	"	

○ 소요조회 물동명세서 (70형 전화기부문)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비고
반 달	70 형용	개	64	신품	
D - 코드	체신 1호용	개	100	"	
"	70 형용	개	90	"	
S - 코드	"	개	150	"	
프레스토	고환용	개	5	"	
송화유니트	체신 1호	개	2	"	
수화유니트	"	개	7	"	
송화유니트	70 형	개	100	"	
수화유니트	"	개	80	"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한강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고건 [5]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5]

◎서울특별시조례제 2443 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민학교(북부) 중 “50
서울화재국민학교”란 다음에 “51 서
울상천국민학교 노원구 상계동 979-2”
란과 “52 서울상천국민학교 노원구
상계동 704-21”란을, 국민학교(강남)
중 “40 서울양정국민학교 강남구 개
포동 77-1”란 다음에 “41 서울영희
국민학교 강남구 일원동 617”란을
각각 신설하고, 국민학교(중부) 중

“17 서울영희국민학교 중구 인현동
2가3”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2444 호

서울특별시한강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
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한강에 수상이용시설
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상이
용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시설 또
는 장비를 말한다.

1. 보트, 요트, 뜬단배 기타 선박류
2. 동력보트와 수상스키 장비
3. 선박계류장
4. 인명구조선
5. 기타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6. 제 1호내지 제 5호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장비

제 3조(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서울특
별시는 한강에 시민의 이용을 목적
으로 하는 수상이용시설을 설치한다.

제 4조(위탁운영) ①서울특별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 3조의

<p>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상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의 진흥 또는 사회체육의 지도 및 유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 5 조 (보조금) 시장은 수상이용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율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수탁자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p> <p>제 6 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시민의 편의제공과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수상이용시설을 위탁받은 목적외의 사용할 수 없다.</p> <p>③ 수탁자는 수상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 7 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p>	<p>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수상이용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 1 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 8 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이용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6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수상이용시설의 운영능력이 없어 인정된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된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제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p>제 9 조 (권한의 위임) 제 4 조, 제 7 조 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이를 위임한다.</p> <p>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78-10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고건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445 호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구분 운영)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 3 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

3.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주민 및 기관·단체의 출연금

5. 기타 수입금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공여된 주민등의 지원금 및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서울특별시는 제 1 항제 1 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4 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 세출의 현금구좌로서 설치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② 적립계정은 서울특별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 5 조 (기금의 운용) 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문학·미술·음악·연예 등의 활동

2.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78-11

<p>3. 지방문화시설의 전립 및 개·보수</p> <p>4. 기타 문화예술의 전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p> <p>③ 직립체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의 적립의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p> <p>제 6 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배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서울특별시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p> <p>② 운용계획에 속하는 기금의 사용은 용도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p> <p>제 7 조 (기금의 재단 출연) 서울특별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또는 운영하고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제 8 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p> <p>서울특별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p>	<p>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담당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문화제장으로 한다.</p> <p>제 9 조 (관제규정의 준용) 운용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대무회계규칙 중 세입 세출과 현금관리에 관한 세규장을 준용한다.</p> <p>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고 전 [인]</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446 호</p> <p>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p> <p>제 1 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p>
------------------------------------------------------------------------------------------------------------------------------------------------------------------------------------------------------------------------------------------------------------------------------------------------------------------------------------------------------------------------------------------------------------------------------------------------------------------------------------------------------------------------------------	---------------------------------------------------------------------------------------------------------------------------------------------------------------------------------------------------------------------------------------------------------------------------------------------------------------------------------------------------------------------------------------------------------------------------------------------------------------------------

<p>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4.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간부 1인 5. 대한상공회의소 간부 1인 6. 공인회계사 1인</p>
<p>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p>	<p>제 4 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1. 상수도 사용료,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손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지하철 운임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쓰레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료 8. 주차요금 9. 기타 시장이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및 수수료</p>	<p>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이 위촉한다.</p>	<p>제 6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채석위원회 과반수와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시정자문위원 2인 2. 공기업분야 교수 1인 3. 언론기관 간부 1인</p>	<p>제 7 조(회의록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제 8 조(간사) ①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p>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78-13

②간사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제 9 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등)
①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는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회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 2 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0 조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예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고건원

◎서울특별시규칙제 2285 호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의 2를 삭제한다.

제 2 조의 3 제 3 항 제 3 호 및 제 4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비: 차량 - 1톤이상 화물차 2대, 중용차 1대
이륜차 또는 자전거 - 5 대 이상

전화 - 3대이상

4. 관리인원 : 20명이상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 3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광고물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 1 항 제 3 호의 구비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7일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풀을 광고물, 옥상광고물, 저주이용간판, 형광튜브, 네온튜브광고물, 주유소풀사인, 고속도로변, 휴게소내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 9 호 서식에 의한 광고물의 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단서중 "공

<p>업자역, 준공업지역안 및”을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과”로 한다.</p> <p>제 15 조의 2 제 3 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이 규칙에 의한 각종 구역의 지정 및 비판에 관한 사항</p> <p>[별표 3]의 설치방법란 제 1 호중 “총 1 이상”을 “2 종이상”으로 한다.</p> <p>[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별표 13]를 삭제한다.</p> <p>[별지 제 7 호서식] 및 [별지 제 11 호서식]을 삭제한다.</p> <p>규칙 제 2092 호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부칙 제 1 항중 “시행하되 제 2 조의 2 울림과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1988.</p>	<p>12.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시행한다.”로 한다.</p> <p>부 칙</p> <p>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기존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p> <p>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설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광고물 중 이 규칙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p>		
[별표 12] 목상광고물(목상비온, 광고활동 포함)			
규 칙	설 배	설 치 방 법	허가신고부 설치기간
1. 흑성화 촉담에서 후퇴한 위치에 설치	1. 현장도 표 착용 금지	1. 설치 마동지역 등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 역 및 상업지역, 다만, 주거밀집지역과 인 접하여 주거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도시미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내 용 및 규격 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나. 역, 공항, 항만, 해미 날(고속 및 시외버 스)의 건물과 시장 또는 구청장이 고	허가, 2년 이내
2. 광고물 의 높이 는 전물 높이의 1/3 이하	2. 옥상네 온의 체 색류원광 표출은 네온간판 면적 1/2 초과금지		

규격	세자	설치방법	위치고정부 및 설치기간
다면, 공업지역은 6m이하 3. 최대 규격은 가로 20mx 세로 15mx 높이 15m이내		<p>중심으로 부터 일정범위를 정하여 고시한 지역</p> <p>다.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외국인을 위한 특정 쇼핑지역 등 지역의 백화상 특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p> <p>라. 1개건물에는 1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상업지역내외 광고물 상호간의 거리는 50m를 유지하여야 한다.(기 설치 분 예외)</p> <p>다만, 자기건물에 자기호사가 입주한 경우에 상품선점이 아닌 자기상호 또는 자기우호를 표시하는 광고물은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마.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p> <p>2. 설치장소별 광고내용</p> <p>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 공장 옥상 또는 기업체 본사 건물옥상에는 기업체명, 공장안내, 자사제품에 한하여 경계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p> <p>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단체제품의 상업광고도 할 수 있다.</p> <p>3. 종별 설치 가능건물(다면, 공업, 준공업 지역은 적용 제외)</p> <p>가. 5층건물</p> <p>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37m이하로 한다.(건물앞면의 중심 지면 기준)</p> <p>다. 건축물의 체단설, 승강기탑, 전망탑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의 상단에 설치</p>	

규 격	색 채	설 치 방 법	허 가 신 고 여 부 설 치 기 간
		<p>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옥상 구조물의 높이는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높이에 산입한다.</p> <p>4. 옥상광고물의 설치</p> <p>가. 옥상광고물의 구조물은 등록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10층 이상에 설치하는 옥상광고물의 구조물은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여야 한다.</p> <p>나. 옥상광고물의 풍하중은 건축물의 구조동에 관한 규칙(건설부령)에 의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전축사 또는 이와 동등이 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하여야 한다.</p> <p>5. 광고물의 형태</p> <p>가. 옥상광고물의 형태는 건축물의 형태, 규모, 입지 등을 참작하여 사각형, 삼각형, 원통형 등 도시미관과 안전에 적합한 형태를 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도로변에 면한 옥상전면 외측과 나란하게 하여야 한다.</p> <p>6. 기타 허가조건 부여</p> <p>가. 광고물의 뒷면 및 옆면 등 광고계시의 물건에는 페인트 기타 방법에 의하여 미판을 갖추어야 한다.</p> <p>나. 파손, 부식,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공중에 위해를 기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p> <p>다. 오염, 변색되거나 광고물의 일부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 항상 미관을 보존하여야 한다.</p>	

규격	색채	설치방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치기간
		<p>다. 허가기준일로 부터 매 1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점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문가, 배온(전광)광고물에 대하여는 전기공사면허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하여야 한다.</p> <p>7. 우상배온(전광)광고물의 설치방법 등</p> <p>가. 우상배온(전광)광고물의 설치방법은 일반 우상광고물과 같다. 다만, 시장, 구청장은 고속도로 또는 주거지역과 일정하여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을 해한 우려가 있거나 도시계획상 교육 및 연구지구, 업무지구등 도시의 기능상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인정할 경우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p> <p>나. 설치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한 자가 사용하여야 한다.</p> <p>다. 신호등 부근 50m전후 좌우에는 점멸식 및 신호등과 같은 배온(적, 황, 녹색)을 사용할 수 없다.</p> <p>라. 점멸등(소형조명전구) 상업용 전자식전광판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수지역(의료기관, 약국,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및 공항을 위한 안내구역)에 한하여 상업용</p>	

78-18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규 칙	내 채	설 치 향 법	허가신고 여부 및 설 치 기 간
		전자식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다. 마. 청소년선도 유해업소(디스코텍, 심야다방 등)의 자극적이고, 원색적(적색광) 색상 표출을 금지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11호

지역별연탄공급구역 지정

연탄사업법 제 24 조 제 1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2호 라목, 제 18 조 제 4 항 및 제 45
조 제 10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1989. 5. 1.

서 울 특 별 시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연탄사업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별표 3에 의한 초연탄
2. 공급구역 및 공급지역

서 도 번	공급구역명	공장소재지	공 급 지 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구, 계양동 ○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파주시, 의왕시, 군포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미금시, 의정부시 장곡동, 호원동, 포천군, 남양 주군, 가평군, 양평군,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 파주군, 고양군, 강화군, 김포군 ○ 강원도 철원군

시·도별	공급구역명	공장소재지	공 급 구 역
			<p>○ 다만, 서울특별시는 인천직할시와 경기도의 인천, 수원구역과 경기도의 의정부구역에서도 공급할 수 있으며, 인천직할시 북구 베양동 및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한양시, 파주시, 의왕시, 군포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이천군, 강화군과 경포군은 인천직할시와 경기도의 이천·수원구역에서, 여주군은 인천직할시와 경기도의 인천·수원구역과 강원도의 춘천·원주구역에서 구리시, 기금시, 의정부시 장곡동, 호원동, 포천읍, 남양주군, 가평군, 양평군, 파주군과 고양군은 경기도의 의정부구역과 강원도의 춘천·원주구역에서도 각각 공급할 수 있다.</p>

- 부 칙 -

- (시행일) 이 고시는 198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 606호 ('83.9.16) 전 탄핵임공급구역 지침 고시를 폐지한다.

2. 관계도서는 종합건설부부 및 강원도청 건설본부과에 비치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9. 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218호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 실시계획인가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3호(89.2.21)로 공람 공고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가. 사업시정위치: 관악구 봉화동

106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
- 명칭: 관악천 하수처리장 시설 녹지 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 시행 면적 45,000㎡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총괄건설본부장)
마. 사업 차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일
로부터 '93.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
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서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첨부 : 수용하여야 할 토지 세부조
서 1부

의하여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서울특
별시 용산구 이촌제 1동 일대 및 서
빙고동 일대의 서빙고아파트지구에 대
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개발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5.
서울특별시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2. 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제
1동 일대 및 서빙고동 일대
 - 나. 면적 : 814,000 m²
3. 개발계획 개요

⑤ 서울특별시고시제 219 호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 고시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76.8.21)에

13. 개발계획 개요

가. 토지 이용계획 총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m ²	%	m ²	%	
제	814,000	100	814,000	100	변경 없음
주택용지	645,088.3	79.25	642,639.3	78.95	2,449.0 m ² 감소
지구 중심	8,486.3	1.04	8,486.3	1.04	변경 없음
주구 중심	26,644.6	3.27	29,093.6	3.57	2,449.0 m ² 증가
분구 중심	1,641.0	0.2	1,641.0	0.2	변경 없음
학교용지	42,363.3	5.2	42,363.3	5.20	"
공원용지	29,998.5	3.69	2,998.5	3.69	"
도로용지	59,778.0	7.35	59,778.0	7.35	"

나. 토지 이용계획 (지구별)

제	1 주 구	2 주 구	3 주 구	비 고
814,000 m ²	352,869 m ²	298,112 m ²	163,021 m ²	변경 없음

제 1435 호

보 1989.5.10 78-21

다. 토지이용계획(제2주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m ²	%	m ²	%	
주구면적	298,112.0	100	298,112.0	100	변경 없음
주구중실	7,754.9	2.6	10,203.9	3.4	2,449.0 m ² 증가
주택용지	229,138.9	76.9	226,689.9	76.1	2,449.0 m ² 감소
학교용지	42,363.3	14.2	42,363.3	14.2	변경 없음
공원용지	1,736.9	0.6	1,736.9	0.6	-
도로용지	17,118.0	5.7	17,118.0	5.7	-

4. 관계도서 비치부서 및 열람방법
 가. 도서비치 :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대표이사 : 박찬언
 주택기획과 범정관리인 : 박춘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주택과 허가번호 : 3489
 품 명 : KSB 1527 파이프 행거
 나. 열 람 : 도서비치 무서에 개별 종류 및 등급 : 벤드형
 방문 열람 허가일자 : 84.3.31
 최소길자 : 89.4.24
 취소사유 : K-S 표시품 불법 생산

◎서울특별시공고제 359 호

K-S 표시허가취소

공업표준화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한국공업규격(K-S) 표시허가를 취소하
 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 4.24.
 서울특별시장

업체명 : 신진밸브공업(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371-8

◎서울특별시공고제 36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 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도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8-22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가.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정책과

1989. 4. 25.

나. 공람기간: 1989.4.25 ~

서울특별시장

1989. 5. 9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순번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1	신설	소로	2	8	390	구로구시흥동 224-1	시흥동 230-4	
	기장	"	3	6	134	시흥동 224-1	" 228-34	
	변경	"	3	6	26	" 228-38	" "	108 구간 폐지
2	신설	"	3	6-9	100	" 421-2	산 71-3	
3	기장	중로	1	20-30	370	오류동 120-7	오류동 223-6	
		대로	3					
		변경	중로	1	20-30	375	"	20m 도로 제한 및 위치 조정
		대로	3					
4	기성	소로	2	8	150	구로동 476	구로동 산 60	폐지
		변경	"	2	8	"	"	
5	신설	"	3	6	240	궁동 186	궁동 179	
	기장	"	3	6	370	" 156-3	" 186	
	변경	"	3	6	300	" "	" 176	70m 구간폐지
	기장	"	3	6	310	" "	" 178-3	
	변경	"	3	6	115	" "	" 179	90m 구간폐지

◎서울특별시공고제 36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7 호(77.7.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
울시 고시 제 372 호(77.10.24)호
지적승인됨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안
각로처 도시계획법 제 27조 2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
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알음
한다.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0 78-23

3. 관할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와 전 설관리과에 배치하고 토지, 건물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란장소: 동작구청 토목과, 건설 관리과	나. 공랑기간: '89.4. ~ '89. 5. . 1989. 4. 서울특별시장
--------------------------------------------------------------------------------------------------	---------------------------------------------------

- 공 랑 개 요 -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의 규모	사업 시행자	사업 학수 및 준공예정일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지적승인
신길 1253 ~ 신길 6동 477	네이밍로확장공사	B= 25 m →B = 35 m L= 1,500 m 하수도	서울특별시장	'89 인가일 ~'89.12.31	금고재 137호 (77. 7. 9)	서고 제 372호 (77.10. 24)

1. 수용 또는 사용토지 전용의 소재, 지목 및 소유권편리법; 생략	제 2 종 전기공사업 영업정지
2. 토지 또는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생략	전기공사업법 제 29조 제 2 항 규정 에 의거 아래의 제 2 종 전기공사업을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광고합니다.
3.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란장소에 기술 또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989. 4.
서울특별시장

⑤ 서울특별시공고제 363 호

면허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법규	처분사항	처분일
제 262 호	별한기업	한상기	영등포구 당산동 1 가 55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제 2 항	영업정지 1월 (89.4.24 ~ 5.23)	89.4.24

78-24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65 호

1989.

서울특별시 회계관제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산하 회계관제공
무원 직인을 회계관제공무원 직인규칙
제 7조 및 제 9조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등록처 제
11조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1. 직인등록 개재현황 : 별첨
2. 직인등록조사서 : 별첨
3. 직인폐기 개재현황 : 별첨
4. 직인폐기조사서 : 별첨

※ 시행일 : '89. 5. 3

직 인 등 록 . 개 재 현 황

가. 지방비

회 계 명	관 서 명	회 계 직 명	직 인 규 칙	사용개시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경리관인	2cm정방형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장수관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지출원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물품관리관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정방형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물품출납원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인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경리관인	2cm정방형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장수관인	"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78-35

회계명	관서명	회계직명	직인구격	사용개시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관리관 일	2cm정방형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지출원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1.8cm정방형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물품출납원 일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인	"	

No.

직인등록조서

회계명 일반회계

관서명(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경리관 인

사용개시일

인영



No.

직인등록조서

회계명 일반회계

관서명(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경리관 인

사용개시일

인영



78-26 제 1435 호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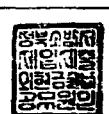
보 1989.5.10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정수관 인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지출원 인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성북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인	
사용개시일		

제 1435 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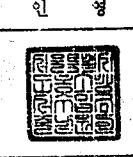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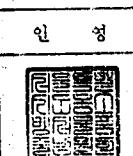
보 1989.5.10 78-27

No.	<u>직 인 등 록 조 서</u>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		
No.	<u>직 인 등 록 조 서</u>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		
No.	<u>직 인 등 록 조 서</u>	인 영
회 계 명 판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경수원 일 사용개시일		
No.	<u>직 인 등 록 조 서</u>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관리원 인 사용개시일		

78-28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지출원 인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인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인 사용개시일		

1. 직인등록 개재현황
가. 지방비

회계명	관서명	회계직명	직인규격	사용개시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경리관 인	2cm정방형	
일반회계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정수관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지출원 인	"	
	"	성북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인	1.8cm정방형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인	"	
서울특별시도봉소방서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경리관 인	2cm정방형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정수관 인	"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지출원 인	"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인	1.8cm정방형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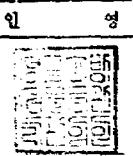
78-30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경리관 일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경리관 일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성수관 일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지출원 일 사용개시일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0 78-3)

No.	<u>직 인 등 록 조 서</u>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성북소방서 물품관리반 일 사용개시일		
No.	<u>직 인 등 록 조 서</u>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일 사용개시일		
No.	<u>직 인 등 록 조 서</u>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굿감 출납원 일 사용개시일		
No.	<u>직 인 등 록 조 서</u>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성북소방서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 일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징수관 인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자출원 인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인 사용개시일		

제 1435 호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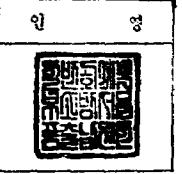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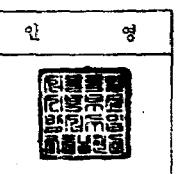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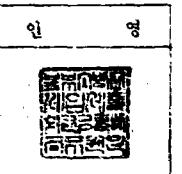
보 1989.5.10 78-33

직 인 등 룩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인 반회계			
판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동출납원 인			
사용개시일				
직 인 등 룩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세입 세출의 현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				
2. 직인폐기 계재현황				
가. 지방비				
회 계 명	판 서 명	회 계 책 명	직인 규격	폐기월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경리관 인	2cm 철박봉	
	"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청수관 인	"	
	"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지출 원 인	"	
	"	북부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	
	"	일반회계 북부소방서 물동출납 천 인	"	
	"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인	1.8cm 철방형	
	"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인	"	
	"			

78-34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No.	직 인 폐 기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경리관 인 사용		
No.	직 인 폐 기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상수관 인 사용		
No.	직 인 폐 기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지 출원 인 사용		
No.	직 인 폐 기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북부소방서 물 관리관 인 사용		

16	<u>직 인 폐 기 조 서</u>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사용				
17	<u>직 인 폐 기 조 서</u>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사용				
18	<u>직 인 폐 기 조 서</u>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인 사용				
2. 직인폐기 계재현황 가. 지방비				
회계명	관서명	회계직명	직인구격	폐기월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 경리관 인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 정수관 인	2cm정방형	"

78-36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0.

회계명	관서명	회계직명	직인규격	폐기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 지출원인	2cm정방형	
	"	북부소방서 물품관리관인	"	
	"	일반회계북부소방서 물품출납원인	"	
	"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정방형	
	"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	"	

Name

직인폐기조서

회계명 일반회계

관서명(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경리관인

사용

인명



Name

직인폐기조서

회계명 일반회계

관서명(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정수관인

사용

인명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0 78-37

No	직 인 폐 기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지출원 인 사용		
No	직 인 폐 기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사용		
No	직 인 폐 기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물품충납원 인 사용		
No	직 인 폐 기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인 사용		

78-38 제 1435 호 시

보 1989. 5.10

작 인 폐 기 조 서						인 명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세일 세출의 현금 출납원 인사용						
◎서울특별시공고제 366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실호 및 영업정지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및 동법 제 2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제 2 층 전						기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면허의 실효 및 영업정지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4. .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 375 호	성지전기공사	전운성	강동구 천호동 307-3	공사업폐지신고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규정에 의거 공사업 면 허 실호	
제 1035 호	동아전기 건설공사	이평재	강동구 천호동 210-6 호	전기공사업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33 조 1 항위반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제 2 항 3 호에 의거 영업 정지 1월 (89.4~89.5) 29.30	
◎서울특별시공고제 369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 규 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89. 1. . 서울특별시장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제 2 항 제 3 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제 1435 호 시

보 1989. 5.10 78-39

- 나 음 -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 分 사 항	처 分 사유
727	대명전기 공사	구로구구로동 (2 부록 10 호)	유근익	영업정지 1개월 (89.4.18~5.18)	2년실적미보고
736	서진전설	동산 2동 10 38-23	이희영	영업정지 2개월 (89.4.18~6.18)	3년실적미보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78 호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제 2 종 전기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전기공사업법 제 29조 2 항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동별

1989. 5.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 치 내용	처 분 내용
234	한국동무공	중구청동 1-11	정진생	전기공사업법 제 29조 2 항 3 호	영업정지 2월 89.5.2~6.31

◎서울특별시공고제 381 호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금회계직공무원지정공고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1980.1.25) 서울특별시 조례 제1385
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회계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 회계직 공무원 지정 내용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충남 연수원
: 산업경제국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충남 공무원
: 상공과장

서울특별시장

직 인 등 록 조 치

인	영

회계명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관서명 (첨소) : 산업경제국 상공과

직 명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충남공무원

사용제시일 : 1989

78-40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서울특별시공고제 382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치소하고 동
법 제 4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

제 31조 1 항 규정에 의거 아래업체의

1989. 5.

서울특별시장

다 음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사유
1019	대광전설전기	개포동 504	김영재	면허취소	전기공사업법 제 7조 3 항 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 383 호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 29조 2 항 3 호에

1989. 5.

의거 아래와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

서울특별시장

아 래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사유
제 1141 호	국화기연사	권국화	강남구 논현동 10-10	영업정지 1월 89.5.3-89.6.2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2 항 3 호

◎서울특별시공고제 395 호

명동구역 제 5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을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317 호 (89.9.30)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234 호
(84.4.27)로 사업계획 결정된 명동구역
제 5 지구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 소유자
인 신영증권주 대표 박병열로 부터 도
시재개발법 제 14 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동법 제 12 조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78-41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는바, 동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팔계서류를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동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1989. 5. 9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공람개요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명동구역 제 5 지구 재개발 사업
- 2) 시행구역(승인율자로 2기) 168-2 외 8필지
- 3) 시행면적: 1,789.8m²
- 4) 시행자: 신영증권 대표 박병렬
- 5) 주민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여의도동 34-8번지
- 6) 시행기간: 인가일로 부터 3년
- 7) 건축기준
 - 대지면적: 1,325 m²
 - 건폐율: 45.86%(건축면적: 607.6m²)

주택건설(임대주택) 사업자 영업정지 해제 대상업체 명단

일련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영업정지기간	해제일자	비 고
1	88-157	우 도 건 설(주)	박영규	방배동 1023-1	'89.4.4-5.3 (1개월)	'89.5.4	
2	88-167	㈜두 천 공 영	박두상	방배동 1023-1	"	"	
3	88-169	주영산종합개발	민예식	잠원동 27-8	"	"	

○ 용적률: 490.97% (면적: 11,452.1 m²)

○ 총 수: 지상 12층, 지하 5층

○ 주용도: 업무 (부속: 판매)

8) 공람기간: '89.5.9-'89.6.8

9) 사업시행계획서 및 규약: 공람장소에 비치한 계획서 및 규약

10)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서울특별시공고제 398 호

주택건설(임대주택) 사업자 영업정지

처분해제 공고

다음 주택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건축법 제 7조 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89.4.4-5.3)한上で로서, 동처분은 기간이 만료되어 동처분을 '89.5.5 자로 해제하였기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0조의 3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9. 5.

서 울 특 별 시 장

78-42 제 1435 호사

보 1989.5.10

일련번호	동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영업정기기간	해제일자	비 고
1	88-171	주상미건설	한정자	서초동1603-68	89.4.4~5.3 (1 개월)	89.5.4	
5	88-187	주식동림건설	홍성선	서초동1337-17	"	"	
6	88-365	신주증전설주	김용범	조규록	서초 1379-9	"	
7	88-201	성립주택건설 (개 인)	손문익	김상용	서초 1303-10	"	
8	88-202	주동네산업	박영우	내곡동산 12-2	"	"	임대주택

구 고 시

◎종구고시제 3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9호 ('88.1.23.) 및 제 83호 ('88.2.8.)로 도시계획기본법(도로) 일각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제 26조, 제 27조, 제 2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표시합니다.
- 한국도시는 서울특별시 종구청 토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서울특별시 종구청장

가. 사업지 행위처 : 종구충무로 5 가 55
번지 ~ 84 번지간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명칭 : 충무로 5 가 55 번지 ~
84 번지간 도로 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 폭 15m, 연장 116m

라. 사업의 시행자 : 종구청장

마. 사업시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 : 일자일로부터 1988.
12.31 까지

○ 변경 : 일자일로부터 1989.
12.31 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세목조사 : 아래

* 아래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개재 생략)

* 건물조사

소재지 지번	구	도	지축면적 (m ²)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충무로 5 가 78-8	불 척	점포 및 주택	127.8	종부 5 가 78-5 외 1 일 (소송중)	일자리 소유권분쟁	

제1435호 시

보 1989.5.10 78-43

소재지지번	구조	용도	저촉 면적 (m ²)	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성명		비고
				주 소	성 명	
충무로5가 84-3	목조기와 스라브	점포및 주택	87	용산구보광동 256-811	강효성	협의보상 완료
충무로5가 85-3	목조기와	"	94.7	충무로5가85	한영신	"
충무로5가 85-5	"	"	74.8	마포구서교동 195-186	정준길	"
충무로5가 85-6	"	"	44.2	구로구독산동 1047-12	오금래	"

○ 토지조사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m ²)	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성명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주 소	성 명	
충무로5가55-9	도로	13		국	협의보상완료
" 55-17	대지	1		삼진전시	"
" 55-18	"	2.7		"	"
" 78-6	"	34.7	충무5가78-6	강영수	"
" 78-7	"	5		국	
" 78-8	"	67.2	충무5가78-8	임계제의 1호	"
" 79-9	"	298.3	강남암구정동현미아파트 113동 605호	정윤숙	"
" 84-3	"	59.5	용산구보광동 256-811	강효성	"
" 84-4	"	121	필동2가87-2	선우숙	"
" 85-3	"	53.6	충무5가85	한영신	"
" 85-5	"	60.7	마포구서교동 195-186	정준길	"
" 85-6	"	33.4	구로구독산동 1047-12	오금래	"
" 79-6	도로	29.8		국	

보 1989.5.10

◎ 용산구 고시 제 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560호(63.9.19)호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된 이태원 446-187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하였으므로 통령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도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4
용산구청장

○ 인가개요

- 가. 사업시행자 : 서울시용산구이태원동 446-187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태원동 446-187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B = 6 \sim 8\text{m}$
 $L = 240\text{m}$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장
- 마. 사업의 날짜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90.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한토지 및 건물
조사 : 별첨

사. 사용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짜계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 및 건물조사 참조

◎ 양천구 고시 제 8 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통령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4.21

양천구청장

다 음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 한전강서주택조합
조합장 안정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7-32의 9필지
○면적 : 6,198㎡
4. 사업시행기간 : '89.4-'90.6

5.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조서						비 고	
구 分	등 글	류 일	폭 원	연 장	시 첨		
기 정	소로	2	8 m	110 m	신정동 86-20	신정동 86-20	
변 경	"	2	8 m	110 m	"	"	폐 지

◎서대문구고시제 11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 서대문구공고 제 62호(89.3.18)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공란공고
한 서울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와 서울특별시조례 제 2126호
(86.12.18)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하
였기 이를 고시한다.
- 광체도로는 서대문구 도시철도과
에 비치하고 아래판례인에게 보인다.

1989. 4. 22
서 대 문 구 청 장

- * 허가내용
 - 사업시행지 : 서대문구 연희동
55-1 일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서울외국인학교 교사숙소 증축
 -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면적 : 54,800 m²

건물 연면적 기준 23,258 m²
금회 399.81 m²
계 23,657.81 m²

- 사업의 시행자 :
서대문구 연희동 55
-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유지재단
대표이사 고 일 선
- 사업의 착수예정일 : 1989.4
- 사업의 준공예정일 : 1989.10.31
- 수용할 토지 : 없음
- 허가조사 : 별첨(생략)

◎동작구고시제 1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73-
2 회 1 필지상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고 같
은법시행령 제 3 조의 5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4. 29
동 작 구 청 장

-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 사업주체 : 유천건설㈜ 대표 김성부

78-46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3. 사업시행지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73 의 2, 472 의 2

나. 면적 및 규모

주택 종별	규 모			내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사업비
	총	동	세대				
연립주택	3	2	30	1,545.44	613.54	2,382.96	1,292,735천원

다. 변경사항 : 건물내부 (식당 및 주방과 침실) 위치변경 및 계단실 입면변경

라. 도면 : 생략

4. 사업기간 : '88.10.10-'89.11.25

◎종로구고시제 2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증명서를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4
종로구청장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임미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51-
7번지의 6필지나. 대지면적 : 2,500.45 m²다. 건축면적 : 2,548.5 m²

라. 규모 : 연립주택 3층 3동 57세대

4. 사업시행기간 : 1989.4-1989.12

◎중랑구고시제 32호

민영주택건설임주자모집공고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
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8번지
2호의 1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4

중랑구청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임주자 모
집공고 승인2. 사업주체 : 주식회사 자양주택
이종호의 1인

3. 사업시행지 및 위치면적 규모

가. 위치 : 중랑구 중화동 18번지
2호의 1필지나. 대지면적 : 2,267.94 m²

다. 규모 : 연립주택 3층 3동 57세대

4. 사업기간 : 1988.6-1989.6

제 1435 호 1989. 5. 10. 시

보

78-4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 4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9호 (89. 4. 4.)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89-1 일대 난우국민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관한 위임 조례에 의거 아래와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4. .

관 악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사

구	부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변	경	학	교		관	악	구	신	림	동
					589-1	일대	11,284	㎡		난우국민학교

나. 도면: 관악구청 배치도면과 같음. (도면 생략)

구 공 고

◎ 성북구 공고 제 1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421호 (79.9.28.)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종암동 78-83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자 도시계획법 제 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알음을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성북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89. 5. .

성 북 구 청 장

- 1) 사업시행자: 종암동 78-83 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암동 78-83 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B=8m, L=420m$
도로개설
4) 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보 1989.5.10

5) 사업차수 및 준공예정일

① 착공 : 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

② 준공 : 91. 12. 31

6) 수용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의 소재지지연, 지목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설명

8) 기타사항 : 의견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또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공고제 2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합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24호 (76.9.24)
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시 고시 제 565호
(86.8.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되어 서울시 고시 제 612
호 (86.8.23)로 지적고시된 정릉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자 도시
계획법 제 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 2 구점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합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
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알을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건설
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4. 공람장소 : 성북구청 (토목과, 건설
관리과)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89. 5.11.

성북구청장

- 공람개요 -

1) 사업시행자 : 정릉동 966 외 155 ~
506 외 1502) 사업종류 및 명칭 : 정릉진입로 확장
공사3) 사업최규모 : 도로확장 $B = 6 - 10m$
 $L = 600 m$

4)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5) 사업차수 및 준공예정일 : 89. 4 ~
91. 12. 316) 수용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이외의 권
리명세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
소, 설명8) 기타사항 : 의견및 기타상세한 사
항은 공람장소에 제출또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 입 면 적	실재이용 상 황	소 유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관 계인 주 소 성 명	
1	정릉동 966-162	대	41㎡	41 ㎡	정릉동 485-2 유두인	
2	〃 966-163	〃	54 ㎡	54 ㎡	〃 106 김태호	
3	〃 966-164	〃	57 ㎡	57 ㎡	〃 139 김애자	
4	〃 966-165	〃	31 ㎡	31 ㎡		(국)
5	〃 490-2	〃	4 ㎡	4 ㎡	정릉동 490 이상언	
6	〃 491-5	〃	26 ㎡	26 ㎡	〃 491-1 체현국	
7	〃 492-6	〃	12 ㎡	12 ㎡	〃 492-5 강연환	
8	〃 506-146	〃	16 ㎡	16 ㎡	종로구 관철동 19-19 김수동	
9	〃 506-147	도로	27 ㎡	27 ㎡	문화재 관리국	
10	〃 517-4	대	1 ㎡	1 ㎡	관악구 불천동 1540-12 윤진업	
11	〃 986-3	도	10 ㎡	10 ㎡		(국)
12	〃 986-4	〃	5 ㎡	5 ㎡		(국)
13	〃 509-1	대	47 ㎡	47 ㎡	정릉동 512 이충국	
14	〃 520-1	〃	8 ㎡	8 ㎡	강원 상적군 장성읍 천계동 장성리 69-5	
15	〃 521-1	〃	12 ㎡	12 ㎡	강서구 화곡동 성일운 1027-40	
16	〃 522-1	〃	13 ㎡	13 ㎡	정릉동 522 성형기	
17	〃 581-4	도	4 ㎡	4 ㎡	서울시	
18	〃 506-149	임	249 ㎡	249 ㎡	종로구 사직동 181-3 노상만	
19	〃 506-150	〃	216 ㎡	216 ㎡	둔암동 606-422 유흥원 외 8인	

보 1989. 5. 1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 (m ²)	실재이용 상황	소유자주소 성명	소유권이의 의원리명세
						관계자주소 성명	
1	정릉동 966-159			41			
2	" 966-155			9			
3	" 966-46	연외조스라브	27	영업용	정릉동 485-2 유두열		
4	" 966-56		49				
5	" 966-6	목조세인기와	53	주택 근린생활시설	정릉동 139 김애자		
6	" 966-86		38				
7	" 106-2	목조기와	34	주택	정릉동 106-2 임종원		
8	" 106-3		49		정릉동 449 김평진		
9	" 106-5		36				
10	" 106-7	목조기와	34	주택	정릉동 106-7 임해운		
11	" 106-7		29		" " "		
12	" 483-5		24				
13	" 483-7	목조기와	24	근린생활시설	정릉동 483-7 안영자		
14	" 483-11	목조기와	22		" 483-11 최무열		
15	" 484	목조세인기와	53	주택 · 점포	정기 양성 일 죽화봉리 415 유친태		
16	" 484		23		" "		
17	" 485-2	목조기와 및 시 멘브록스레트	6	주택 및 근 린 생활시설	정릉동 434 유두연		
18	" 966-158		6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9. 78-51

일련 번호	소재자 지번	동·전화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의 관계자 주소 성명
							의원리명세
19	정릉동 966-158			2			
20	" 966-158			12			
21	" 966-158			12			
22	" 489-2	목조기와 및 시 멘트돌스러브		13	주 택	정릉동 522	한용선
23	" 490	목조초층		4	주 택	정릉동 490	진성만
24	" 491-4			2			
25	" 515-1	연화조기와 시 멘트돌스러브		5	주택·광	정릉동 515-1	이철상
26	" 514	목조기와		6	주택	정릉동 389	강자화
27	" 523-3			8	"	미아동산 103	박소자
28	" 523-3			12	"	"	"
29	" 523-2			24	주택 근린생활시설	정릉동 523-2	이철일
30	" 523-1	시멘트돌 시멘트기와 연화조기와 기와 및 시멘트 돌스러브		25	주택	정릉동 253-1	조성재
31	" 582-1	기와 및 시멘트 돌스러브		15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길음동 547-55	서인석
32	" 582-2	시멘트돌 시멘트기와		10	주택	정릉동 582-2	최순남
33	" 583-1	목조초층		3	"	정릉동 583-1	김봉선
34	" 584	시멘트돌기와		2	"	820W END AVE 123 New York Ny 10025	이의전
35	" 492-7			3			
36	" 523-4	목조기와		12	주택	미합중국미시간 주 윌리암서부에 티더인가 4357	김영훈

78-52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0.

◎ 구로구공고제 2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 호 (74.1.14.)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한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989. 4. 26.
구로구청장

— 공사 개요 —

1.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70-66 의 7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개봉동 70-66 의 7 도로 개설 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포장 $B=6^M$, $L=100^M$ 하수도
4.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구로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8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항의 규정에 의한 판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

물 조서 (생략)

◎ 구로구공고제 3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2 호 (73.11.26.)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한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989. 4. 26.
구로구청장

— 공사 개요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385~구로동 685-46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구일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포장 $B=10^M$, $L=150^M$ 하수도: $D=450\sim600\%$, $L=290^M$
4.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구로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8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제 1435 호 시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사 (생략)

◎구로구공고제 31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 랍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69.1.
18)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
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
한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자 도
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989. 4. 26.

구로구청장

—공사개요—

- 사업 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6번지 일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고척동 63-76
간 도로확장 공사
-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 = 20^M$,
 $L = 30^M$, 하수도 :
-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구로
구청장)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89. 12. 31.

보 1989. 5. 10. 78-53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
지 및 건물조사 (생략)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사 (생략)

◎구로구공고제 32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 랍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1 호 (78.7.
8)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
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
한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자 도
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989. 4. 26.

구로구청장

—공사개요—

- 사업 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3-124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고척동 103-124
간 도로개설 공사
-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 = 15^M$, $L = 300^M$, 하수도 $D = 600^M$, $L = 300^M$
-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구로
구청장)

78-54 계 1435 호 시

1989. 5. 10.

구청장)

5. 사업 확수 및 준공 예정일: 인가일-
'8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및
건물조사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사 (생략)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 = 8^m$
 $L = 90^m$ 하수도:

4.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구로
구청장)

5. 사업 확수 및 준공 예정일: 인가일-
'8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
지 및 건물조사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사 (생략)

◎ 구로구 공고 제 3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69.1.
18)로 시설 결정 및 기적승인된 도
시계획시설 (도로 및 하수도)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
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989. 4. 26.

구로구청장

-공사개요-

-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9-25~551-173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구로 5동 551-
570 관 도로 개설공사

◎ 송파구 공고 제 4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6 호 (75.12.
1)로 시설 결정 및 기적승인된 도
시계획사업 (도로)의 사업 실시 계획
인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공고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의 2 항 규정에 의거 광고일로 부
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
합니다.

2.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3. 공람 장소: 송파구청 토목과

제1435 호 시

보 1989. 5. 10. 78-55

(전화 410-3405)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89. 4.

송파구청장

-공 람 개 요-

1. 사업명 : 풍남국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 : 풍남동 170의 2-171 외 2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B=8^m, L=80^m$
4.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6. 기타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문의 제출 바랍니다.

◎은평구공고제 64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
공 람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69.1. 18)로 지적승인된 녹번동 142- 녹번동 146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9. 5. 2.

은평구청장

-공 람 개 요-

- 가. 사업명 : 녹번동 142- 녹번동 146간 도로개설공사
- 나. 위치 : 녹번동 142의 92- 녹번동 146의 2간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6^m, L=75^m$ (도로)
-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89. 4 - '90. 12.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사 결첨 (생략)

◎은평구공고제 65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
공 람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6호 (85.7. 15)로 지적승인된 구파발동 119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78-56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0.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알음합니다.

1989. 5. 8.
은평구청장

—공람개요—
가. 사업명: 구파발동 119 주변 도로개설공사
나. 위치: 구파발동 113의 27 = 118번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 = 4^M$, $L = 200^M$ (도로)
라.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89. 4 ~ '90. 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사 (생략)

◎ 은평구공고제 67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호 (69.1. 18)로 지적승인된 불광동 436-3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 본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알음합니다.

1989. 5. 2.
은평구청장

—공람개요—
가. 사업명: 불광동 436-3 앞 도로개설공사
나. 위치: 불광동 436-3 앞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 = 6^M$, $L = 15^M$ (도로)
라.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자: '89. 4 ~ '90. 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사 (생략)

◎ 서대문구공고제 77호

회계관계 공무원적인 등록 및 폐기

-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 7조 및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인등록 및 폐기 신고하고 등록증 제 11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4. 28.
서대문구청장

제 1435 호 시

1989.5.10 78-57

1. 사용개시일자 : 1989.4.29	3. 폐기직인 : 서대문구재개발사업기금 정수관
2. 사용책임인 : 서대문구 도로굴착부구 기금 정수관	4. 직인등록조서 : 아래
	5. 직인체기신고서 :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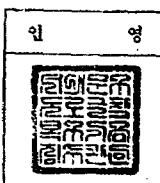
서 주 희 미 드 린 디 케

회 제 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관 서 閱書 : 서대문구

작명 :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 기금 치수과

사용개시일 : 1989년 4월 29일



최 일 헤 기 신 고 선

회계명: 도시재개발사업 자금 통제체계

과 성 명 : 신재호

작성자 : 석대봉국 / 제작일자 : 2024년 05월 15일 / 파일명 : 제작자명_제작일자

사용기한 : 1962. 12. 18부터 1989. 4. 28까지



◎ 서대문구 광교제 78호

도시경관사업(학교) 시행에 따른 국화축제

1. 우리구 관내 서울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의 2 규정에 의거 14일간 청탁의뢰를 있으니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9, 5, 3

서대문구청장

78-58 제 1435호 시

보 1989. 5. 10

사업의 명칭	위 치	사 업 내 용	사업시행자	공 립 기 간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서울외국인 학교 교사 증축	연희동 55-1 일대	교사증축(기준 3층위 1개층 증축·연면적 1,002.10㎡)	재단법인 서울 외국인 학교유지 재단 대표이사 고 일 선	89. 5. 3 ~ 89. 5. 17

사업소고시

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
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7호

하천 계 속 설 용 허 가

1989. 4. 17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나 아래와 같이 하천의 계속 겸용

한강 관리 사업소장

허 가 년도월	위 치	지목	점 용 면 적 체	점 용 목 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자	
						주 소	성 명
1989. 4.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양동 423 번지선 (한강)	하천	480㎡	유선장 설치	'89. 4. 14 ~ '90. 4. 13	서울특별시 성동 구 관광동 189	㈜아리랑보트 대표 김대천

◎한강관리사업소 고시제 9호

박을 운항허가하고 같은법 제 2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선박 운항허가 고시

1989. 5. 1.

한강구역내 유선업 영업에 대하여 하
천법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선

한강 관리 사업소장

선박 운항허가 내용

수 허 가 자	위 치	목 적	내 용
한강 관리 사업소 대표 김대천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427-7 번지선 한강	유선업 경영을 위한 선박 운항허가	• 노보트 : 20 척 • FRP 폐달식보트 : 30 척 합계 50 척

제 1435 호

보 1989. 5. 10 78-59

수 허 가 자	위 치	목 적	내 용
아리랑보트 주 대 표 김 대 천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427-7 번지 선한강	유선업 경영을 위한 선박 운항허가	• 노보트 : 20 척 • FRP 폐 달식 보트 : 30 척 합계 50 척
한강 산업 대표 김 육	"	"	• 노보트 : 15 척 • FRP 폐 달식 보트 : 24 척 합계 39 척

○ 허가 기간 : '89.5.1 ~ '89.10.31

◎ 한강 관리 사업소 고시 제 10 호

조례 4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
합니다.

선박 운항 허가 고시

한강 구역 내 유선업 영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 2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운항 허가하고 같은법 제 25

1989. 5. 4

한강 관리 사업소장

○ 선박 운항 허가 내용

수 허 가 자	위 치	목 적	내 용
로얄관광개발 주 대 표 박 의 철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427-7 번지 선한강	유선업 경영을 위한 선박 운항허가	• 노보트 : 10 척 • FRP 폐 달식 보트 : 30 척 • 합계 40 척

○ 허가 기간 : '89.5.4 ~ '89.10.31

사 령

◎ 1989년 4월 18일자

인 사 발 험 통 지

령 제 150 호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김 성 수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김 영 한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김병환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안준호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최동윤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장석명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전성수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신용우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김경호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이인구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유대식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고홍석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김양수	총무처 토목기과서보 토목기과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신종호
총무처 행정사무관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안재경	총무처 토목기과서보 토목기과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이상립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0 78-61

<p>총무처 전기기자시보 전기기자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총무처 건축기자시보 건축기자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대 통령

4 금공무원전보

령 제 15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광수	통계담당관	내무국	서기관

◎ 1989년 4월 21일자 지방고용직공무원파견

령 제 152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종학	양천구 파견(신정배수지 운영요원: '89.4.22~'89.10. 15)	대현산배수지사무소	지방수도보조원
김동선	"	"	"

◎ 1989년 4월 20일자 인사발령통지

령 제 153 호

<p>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서무과 행정사무관 임동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p>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김성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p>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김영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p>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김병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p>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최동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p>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전성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p>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김경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p>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유대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p>
------------------------------------------------------------------------------------------------------------------------------------------------------------------------------------------------------------------	---------------------------------------------------------------------------------------------------------------------------------------------------------------------------------------------------------

78-62 제1435호 시

보 1989.5.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김양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고홍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안재경	서울특별시 토목기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신종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안준호	서울특별시 토목기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이상립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장석명	서울특별시 전기기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홍순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신용복	서울특별시 전속기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이인구		대통령

② 1989년 4월 24 일자 기동근무(노동비상대책본부)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재량	노동비상대책본부 본부장 ('89.4.24 ~ 별도지시시까지)	보건사회국장	이사관
손장호	" 부본부장	마포구부구청장	지방부이사관
문자현	"	사회과장	서기관
강정웅	"	사회과노동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서재수	"	관광담당관전홍제장	"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78-63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 성 중	노동비상대책본부 본부장 ('89. 4. 24- 별도지시시까지)	법무담당관 법제체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하	"	교통기획과 지하철 도체장	"
김 흥 무	"	법무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육 창 수	"	사회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회 일	"	교통기획과	"

◎ 1989년 4월 21 일자 5급이하공무원전보(기구개편)

경계 15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라 송 주	시정개발담당관 제도개선제작	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권 혁 소	법무담당관 송무1과장	법무담당관	"
최 동 영	보험연금과 직장보험제작	보험연금과	"
배 전 설	나회과 직업안정제작	"	"
원 배 수	"	"	지방행정주사보
이 영 은	"	"	"
황 성 회	"	"	"

◎ 1989년 4월 29 일자 기능직공무원전입

경계 15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 청 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서초구 근무를 명함	국가원로자문회의	기능직 기계원 8등급

◎ 1989년 4월 25 일자 지방별정직 9급상당공무원신규임용

경계 15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심 해숙	지방별정직 9급상당(비서)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내무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규

78-64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0

⑥ 1989년 4월 26일자		6급 이하 공무원 파견	경제 157호
성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급
정광록	사회파(서울청소년센타건물인수단)파견 ('89.4.26~별도지시시까지)	목동지구개발(사)	지방행정주사
윤경수	"	"	지방행정서기
곽현용	"	"	"
권명희	"	도봉구	지방교화원
황종규	"	관악구	지방기재보조원
신현봉	"	종합운동장관리사	"
김명환	"	성북구	지방전기보조원
안덕규	"	송파구	"
이광섭	"	세종문화회관	지방방호원
김한진	"	서초구	지방감시원
유상호	"	성동구	"
전영주	"	성북구	"
이주성	"	은평구	"
심주택	"	종합운동장관리사	지방찰무원

7급 공무원 파견		경제 158호	
성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급
소경만	사직개발당원 파견 (서적개혁연구원 행정실 요원) ('89.4.26~별도지시시 까지)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기능직공무원 전보		경제 159호	
성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급
박민희	한강관리사업소	난지도쓰레기 종합처리 사업소	지방기지장(7등급)
박기호	"	"	"
송명수	"	서부위생처리장	지방기제장(6등급)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0 78-65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영설	한강관리사업소	서부위생처리장	지방기계장(6등급)
원기환	"	"	"
이충기	"	"	지방기계장(7등급)
이석만	"	"	지방기계원(8등급)
나민수	"	"	"
김기남	"	"	"
나동선	"	"	지방전기원(8등급)

◎ 1989년 4월 28 일자 6급보건직 공무원파견

경 제 160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손기순	서울지방검찰청 파견 ('89.4.28~'90.4.27)	보건위생과	지방보건기사

◎ 1989년 4월 26 일자 기능직 공무원면직

경 제 16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방태천	원예 과하여 그직을 면함	총무과	지방기계원(8등급)

◎ 1989년 4월 29 일자 기능직 8등급이하지방공무원특별인용

경 제 162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정철	지방기계원(8등급)	시로구	기계원(8등급)

◎ 1989년 4월 27 일자 기능직 공무원전보

경 제 163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봉만	사회과(서울청소년센타근무 요원)	보험연금과(서울청소년 센타근무요원)	지방기계장 (7등급)
모종산	"	"	지방전기원 (8등급)

78-66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 1989년 5월 1일자 6급 기술직 광무원 징계처분 취소 및 전보			명 제 164 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 서	직 급
박 신길	'86.7.25자 해임처분을 대 변 천관결 ('88 누 1943.'89. 3.28)에 의거 동일자 취소 은 평구 근무를 명함	판 악 구	지방토목기사
◎ 1989년 4월 28일자 지방고용직 광무원 파견 및 파견 해제			명 제 165 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 서	직 급
윤 일 구	사회파 (서울청소년센타건물인 수단) 파견 ('89.4.28 - 별도지시시 까지)	동대문 구	지방기계보조원
황 종 규	사회파 파견해제	판 악 구	"
◎ 1989년 5월 1일자 5급 광무원 전보 (임업직)			명 제 166 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 서	직 급
조 두환	녹지과 녹지보호과장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지방임업기자
전 종식	녹지과 조경재장	토목공사과 조경재장	"
박 경영	기술심사담당관 조경심사계장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
바 용목	종합건설본부	식물과장	"
성 현영	"	종합건설본부 공사 5부	"
이 용재	용산구	강서구 녹지과장	"
홍승돈	성동구	동대문구 녹지과장	"
황 이연	동대문구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
김 일근	성북구	보라매공원 관리사업소	"
정 세영	서대문구	기술 담당관	"
이 강운	강서구	녹지사업소 사업과장	"
이 광옥	동작구	강동구 공원 녹지과장	"
		종합건설본부 공사 5부	"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0 78-67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영식	관악구	한강관리사업소 녹지 2 계장	지방임업기과
유만수	강남구	성동구 공원녹지 과장	"
김홍원	강동구	관악구 공원녹지 과장	"
김수원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서대문구 공원녹지 과장	"
국용설	녹지사업소 사업과장	녹지과 녹지 보호체장	"
노진학	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	강남구 공원녹지 과장	"
	기술감당관		
이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녹지과 경계장	"
최평빈	한강관리사업소	기술심사담당관 조경심사계장	"

5급공무원 흐드(기계, 전기, 보건, 화공직)

령체 16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동오	운수 2 과 정비계장 직무대리	울림픽설비 담당관 기계계장	지방기계기과
정보화	전축지도과 전축설비계장	목동지구개발사업소 기계계장	"
최명준	종합건설본부	차량정비사업소장	"
이동윤	자동차관리사업소 겸사과장	전축지도과 전축설비계장	"
서재석	차량정비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 난지하수처리장	"
이규진	세종문화회관	자동차관리사업소 겸사과장	"
김대환	한강관리사업소	운수 2 과 정비계장	기계기과
최화형	도로과 기계계장 직무대리	안양하수처리장	지방전기기과
김영웅	수원기전과 수원기전계장	김포수원지사무소장	"
한상열	종합건설본부	울림픽설비 담당관 전기계장	"
김복동	"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전기계장	"
이충호	"	세종문화회관 전기계장	"

78-68 제 1435호 시

보 1989.5.10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용상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영선과장	종합건설본부공사 3부	지방전기기록
송용찬	김포수원지사무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영선과장	"
정득모	세종문화회관	종합건설본부공사 5부	"
김형동	도봉구	환경파경 2 계장	지방보전기록
김현동	용산구	영등포구 환경파장	"
신동건	환경파경 2 계장	용산구보건소 방역파장	"
장홍수	건설자재사업소 수공시험제장	청소과 위생시설제장	지방화공기록
송웅기	청소과 위생시설제장	도봉구 환경파장	"
연광훈	한강관리사업소	건설자재시험소 수공시험제장	"

5급 공무원 전보(건축직)

영재 16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전희상	기술심사 담당관 건축심사과장	건축지도과 건축계획과장	지방전기기록
손세용	재개발과 재개발사업 2 계장	울림체 건축 담당관	"
임제호	주택개량과 개량 2 계장	울림체 건축 담당관	"
심판종	건축지도과 건축계획계장	건축 3 계장	"
박성수	시립대학교	주택개량과 개량 2 계장	"
조성재	동대문구	도봉구 건축파장	"
박희수	종합건설본부	세종문화회관 시설과 관리계장	"
이강규	"	목동개발사업소 건축 공사과 건축 1 계장	"
전희선	"	마포구 건축과장	"
박용성	세종문화회관	내무국	"
강재우	마포구	종합건설본부공사 2부 시립대학교 시설파장	"
이원훈	도봉구	강동구 건축파장	"

제 1435 호 시

보 1989. 5. 10 78-69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황의열	내무국 (도시개발공사파견 '89.5. 1- 벌도지시서까지)	동대문구 건축과장	지방건축과장
권기범	강서구	구로구 건축과장	"
최병인	구로구	강서구 건축과장	"
이석도	영등포구	종합건설본부공사 2부	"
신창선	강남구	기술심사담당관 건축 심사계장	"
이한명	강동구	영등포구 건축과장	"
노상우	내무국 (도시개발공사파견 '89.5. 1- 벌도지시서까지)	울림픽전축 담당관 건축 1계장	"

5급 공무원 전보(토목과)

령 제 169 호

성명	발령사항	천도서	직급
장성용	기 축심사 담당관 토목심사처장	국가발전 기획계획처장	지방토목기획
여옹원	시설계획과 시설계획 1계장	종합건설본부 한강개발부	"
송득범	" 시설계획 2계장	노원구 수도공사과장	"
주봉현	도시개발과 택지 개발처장	도시개발과 환자계장	"
공성식	재개발과 재개발사업 1계장	울림픽토목담당관 토목 2처장	"
노경찬	도시개발과 환자처장	도봉구 도시정비과장	"
김호식	재개발과 재개발계획처장	강남구 토목과장	"
양영규	도로과 도로시설처장	울림픽토목담당관 토목 1계장	"
조성현	급수과 급수장치처장	구로구 수도공사과장	"
남승운	치수과 치수처장	종합건설본부 한강개발부	"
이연배	종합건설본부	급수과 급수장치처장	"
조근호	"	은평구 도시정비과장	"

78-70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영환	종합건설본부	시설계획과 시설계획 2과장	지방토목기과
지명건	"	치수과 치수과장	"
신종호	한강관리사업소	내무국	"
김태준	동부건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마포구 토목과장	토목기과
김문영	서부건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내무국	"
송현섭	북부건설사업소장	목동지구개발사업소 토목공사과장	지방토목기과
이만구	성동구	강남구 수도공사과장	"
김영세	도봉구	성동구 토목과장	토목기과
어운화	노원구	동대문구 수도공사과장	지방토목기과
정병택	구로구	영등포구 토목과장	토목기과
박길동	영등포구	구로구 토목과장	지방토목기과
김광재	"	관악구 도시정비과장	"
유학조	강서구	한강관리사업소 시설과 시설 1과장	"
김진환	마포구	영등포구 도시정비과장	"
천재봉	관악구	동부건설사업소장	"
신상수	강남구	종합건설본부공사 4부	"
이기영	"	서부건설사업소장	"
최백규	구로구	북부건설사업소장	"
이상립	동대문구	내무국	"

5급 공무원 정보

령 제 170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창희	종합민원실 민원 1반장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이찬호	" 진원 2반장	조사담당관	"
임동남	공보관 공보계장	공무원교육원	"
동연호	심사분석담당관 심사분석 2과장	양천구	"
김종한	투자관리담당관 투자심사 1과장	도봉구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전 회 구	투자관리담당관 투자설사2과장	강동구	지방행정사무관
김 태 호	시정개발담당관 시정연구처장	중구	"
정 회 용	" 제도개선처장	중랑구	"
김 상 법	법무담당관 종무2과장	내무국	"
신 수 목	문화담당관 문화체장	울림씨기획담당관	"
라 쟁 주	" 문화재1처장	시정개발담당관	"
박 회 수	조사담당관 환경순찰처장	울림씨판리담당관	"
박 동 수	내무국(부시장실)	동작구	"
박 총 선	시민과 민원2처장	물가지도과	"
김 현식	새마을지도과 새마을사업처장	내무국	"
박 총 결	회계과 계약처장	회계과	"
최 동 조	" 회계실사처장	청소과	"
김 상 규	" 지출처장	사회과	"
박 광 부	관제과 재산처 분1처장	관제과	"
김 용 구	" 재산처 분2처장	울림씨기획담당관	"
김 준 회	" 재산감정처장	관제과	"
오 병 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처장	종합민원실	"
권 대 경	사회과 생활보호처장	울림씨기획담당관	"
김 순 초	보건연금과 의료보호처장	서초구	"
박 둘 봉	상공과 공정처장	마포구	"
김 환 주	물가지도과 물가1처장	시민과	"
김 영 호	" 공정거래처장	내무국	행정사무관
정 삼 문	건설행정과 건설기획처장	"	지방행정사무관
우 대 영	주택기획과 주택세칙처장	주택기획과	"
이 삼 봉	" 용지처장	성북구	"
김 연 수	주택개량과 개량제회처장	주택기획과	"
오 도 석	청소과 작업관리2처장	목동지구개발(시)	"
조 영 회	녹지과 녹지행정처장	물가지도과	"
김 장 호	전진생활과 전통제작	"	"
전 귀 전	교통기획과 교통운영처장	문화담당관	"
정 태 산	운수2과 운수과장처장	운수2과	"

78-72

제 1435 호 시

• 1989.5.10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동해	운수2과 지도제장	주택기획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춘기	하수과 하수파장	환경관리사업소	"
곽재상	공업시험소장	판매과	"
김인식	보건환경연구원 서무과장	녹지과	"
김홍만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운영과장	건설생활화	"
이재식	서대문병원 서무과장	종로구	"
김상하	자동차관리사업소 관리과장	회체과	"
황병철	" 등록과장	은평구	"
권우승	" 지소장	하수과	"
이운호	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	자동차관리사업소지소장	"
김기창	시립운동장 운영담당관	판매과	"
장성우	공무원교육원	용산구	"
신영기	"	투자관리담당관	"
단경수	"	회체과	"
이경관	내무국 (공무원교육위원회)	시정개발담당관	"
전덕상	공무원교육위원회	내무국	"
이영대	내무국 (공무원교육위원회)	전설행정과	"
박용익	환경관리사업소	용산구	"
윤상수	보험연금과 지역보험체장	강남구	"
조남성	종로구	보험연금과	"
전혁모	중구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
차원철	용산구	영등포구	"
최종문	"	관악구	"
임병철	중랑구	시립운동장	"
유시유	도봉구	내무국	"
문영승	마포구	양천구	"
문준호	영등포구	목동지구개발사업소	"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78-73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채승기	서초구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사무관
정현국	"	공업시험소장	"
정광희	강남구	내무국	"
황홍환	"	자동차관리사업소	"
김병준	강동구	관왕담당관	"
서병각	"	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	"
김영한	종로구	내무국	"
전성수	용산구	"	"
이진구	"	"	"
안새경	은평구	"	"
안준호	"	"	"
신용복	서대문구	"	"
김병환	양천구	"	"
장석령	"	"	"
김경호	영등포구	"	"
김성수	성북구	"	"
김양수	관악구	"	"
최동윤	동작구	"	"
유대식	"	"	"
고홍식	송파구	"	"
강신일	내무국	보건환경연구원	"

겸임근무

령 제 17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광부	판재과 국유재산계장 겸임	판재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삼봉	주택기획과 주택관리계장 겸임	주택기획과	"
김환주	불가지도과 물가 2 계장 겸임	불가지도과	"

78-74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인 사 발령 통지		현 제 172 호
국가원로자문회의 사무처 총무담당관실		내무국 근무를 명함.
서기관	이정리	89.4.29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89.4.29	서울특별시장
대통령		

(◎) 1989년 5월 2일 9급 기술직 공무원 파견 현 제 173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오광진	마포구(남지도산업체기물·단축요원) ('89.5.2-'89.7.31)	구로구	지방보건기원보
민경일	"	영등포구	"

(◎) 1989년 5월 1일 8급 지방공무원 전출 현 제 174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장우천	강원도 양양군 진출을 명함.	동작구	지방행정서기

(◎) 1989년 4월 1일 지방별정직 8급 상당 공무원신규임용 현 제 17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이창선	지방변경직 9급상당 공무원에 임함. 2호봉을 즐함. 경찰국 면허과 근무를 명함.	신규

(◎) 1989년 5월 2일 5급공무원전보 및 파견해제 현 제 176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주기	내무국 근무(국무총리행정조정실 파견 89.5.2-90.3.31)	율립파 관리	지방행정사무관
김용태	" (")	담당관	"
김신경	문화담당관(시립미술관) 파견해제	상공파	"
		물가재도파	"

(◎) 1989년 5월 4일 6급이하공무원파견해제 현 제 177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진석우	한강관리사업소 파견해제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노창수	"		"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78-75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서성기	한강관리사업소 파견해제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서창기	"	"	"
김기혁	"	"	지방토목기사보
송재룡	"	"	"
이구선	"	"	지방토목기원보
김강호	"	"	"
이상배	"	"	"
이보현	"	"	지방행정주사
김종한	"	"	지방행정주사보
한혁록	"	"	지방토목기사보
서화연	"	"	지방타자원

⑤ 1989년 5월 4일 파견 및 겸직 근무 형 제 17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우경구	지하철건설기획단장 겸직근무	종합건설본부	관리관
이신영	도시개발공사 파견 해제 종합건설본부 파견 ('89.5.4 - 별도지 사시 까지)	총괄지구개발 사업소	지방시설기감
서무전	한강관리사업소 파견 해제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종합건설본부	지방시설기정
조세호	종합건설본부 파견 ('89.5.4 - 별도지 사시 까지)	울림파설비담당관	지방공업기정
이상훈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지하철건설기획단 겸직 근무	수원기전과	공업기정
김영수	"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사무관
백영현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	지방토목기좌
성광일	"	"	지방통신기좌
이종환	종합건설본부 파견 ('89.5.4 - 별도지 사시 까지)	성북구	지방토목기사
최남용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울림파설비담당관	지방건설기사

78-76 제 1435호 시

1989.5.10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두수	종합건설본부 파견 ('89.5.4 - 별도지시시까지)	올림픽설비담당관	지방통신기사
김영병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하동우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종합건설본부 파견 ('89.5.4 - 별도지시시까지)	종합건설본부 영등포구	지방기체기사
최창진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지방전기기사
	"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 1989년 5월 10일

6 급이하기술직공무원 전보

령 제 179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인행	건축지도과	올림픽건축담당관	지방건축기사
이병석	종합건설본부	"	지방건축기사보
최성태	기술심사담당관	"	"
최정섭	서울대 공원관리사업소	올림픽설비담당관	지방기체기사
최완종	노원구	서울대 광원관리사업소	서울대 광원관리사업소

5 급기술직공무원 전보

령 제 180 호

성명	발령시항	현부서	직급
김종호	내무국	올림픽설비담당관	지방통신기자

◎ 1989년 5월 9일

결임근무 해제

령 제 18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제량	가정복지국장 결임근무 해제	보건사회국장	이사관

인사발령통지

령 제 182 호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장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장에 보함.
서기관	신태희
부이사관에 임함.	대통령 89.5.9.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78-77

⑤ 1989년 5월 11일 4 급 공무원 직무 대리				령 제 183 호
성명	발령사장	현부서	직급	
김정만 대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동물부장 직무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지방수의관	

⑥ 1989년 5월 10일 지방별정직 8급 상당 공무원 면직				령 제 184 호
성명	발령사장	현부서	직급	
최혁균 이후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전산담당관 마포부녀복지관	지방별정직 8급 상당 "	

지방별정직 7급 상당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 185 호
성명	발령사장	현부서		
최혁균	전산담당관(전산처리사) (3호봉)	지방별정직 7급 상당	신규	
윤미숙	전자제산소(전자처리사) (1호봉)	지방별정직 8급 상당	"	
이태일	"(기계처리사) (1호봉)	지방별정직 8급 상당	"	
양미영	"(천공원) (1호봉)	지방별정직 9급 상당	"	
김현진	공무원교육원(영화기사) (3호봉)	지방별정직 8급 상당	"	
이후영	마포(훈련교사) 부녀복지관(1호봉)	지방별정직 7급 상당	"	

공무국외여행명령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투자관리 담당관 주사	서기관 지방행정 오승환	조제호	일본	89.5.1 ~ 5.4	서비	차관조기상환협의

78-78 제 1435 호 시

보 1989.5.10

공 루 국 외 여 행 명령

여 행 자			여 행 국	여 행 기간	여 행 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보건환경 연구원	보건연구관	유병태	미 국	89.5.15 - 5.25	계약자 부 담	AIDS 검사장비 인수 및 기술연수
가스과	보건연구사 지방 화공기자	최성민 황정률	미국, 서독, 네덜란드	89.5.21 - 6. 3	주회지 부 담	해외 가스관련 산업시설 시찰입기자단의 미국도시 행정 비교시찰단 동행
공보관	지방 부이사관	반충남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 류	89.5.31 - 6.14	시 비	

공 지 사 항

작 악, 변 경 및 신 설 내 역

인	변 경 전	변 경 후 신 설			
영					
공 인 명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 분임경리관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 분임지 출원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 경리관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 지 출원	남부건설사업소 도로준차복구기금 지 출원